

관계기관 의견조회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외 교 부
기 획 조 정 실
인사기획관실

1. 개정 이유

「공무원임용령」 개정 추진에 따라 삭제 예정인 단서를 직접 인용하고 있는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외무공무원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격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한편, 승격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정 시에도 당시 직무등급에서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서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격소요최저연수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인정 조건에 관한 단서 삭제
(안 제2조의3제3항제3호다목)

나. 경력평정 시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승격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당시 직무등급에서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함을 명확히 서술(안 제4조제3항)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를 준용해 오던 것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실제 적용에는 변동사항 별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개정 진행중),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경력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동 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승격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무등급에서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승격소요최저연수)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 의 기간에 포함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 해제 전에 재직하던 직무등급의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제1 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 2. (생 략)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기간 가. · 나. (생 략)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u>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u> <u>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u> <u>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u> <u>의 1년으로 하되, 「공무원</u> <u>임용령」 제31조제2항제1</u> <u>호다목1) 및 2)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u>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u> 4. (생 략)	제2조의3(승격소요최저연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u>그 휴직기간.</u>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제4조(경력평정 승격점수) ① · ② (생 략) <u>③경력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u>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경력평정 승격점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경력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동 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승격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무등급에서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u>
--	---